2019년도 제3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Ⅰ. 회의 개요

o 일　　자 : 2019. 4. 10.(수요일)

o 방　　법 : 온라인심의

o 대 상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

- 심의위원 : 박성호, 임진모, 전응준(분과위원장) 위원

o **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**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·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안건 및 결과

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회의안건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・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0건(안건번호 제2019-11048~11097호)

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 중에는 최근 영상저작물에 관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는 '폴라(2019)', '클로버필드 패러독스(2018)' 등 최신작 영상저작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 즉 이러한 영상저작물이 불법 복제 전송됨으로써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본건 심의의견서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서명 란 등에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바입니다

- B 위원 : 최신 영화를 복제, 전송한 행위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없으므로, 시정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

- C 위원 : 50건 모두 저작권자(넷플릭스)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

2019년 제3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4. 17.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

분과위원장 전응준